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,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
 -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2조)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(안 제3조)
-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
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안 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.
-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, 서민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